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99호 2025. 6. 30. (월)

조례 · 규칙

○ 목포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3
○ 목포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6
○ 목포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11
○ 목포시 의정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 목포시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17
○ 목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19
○ 목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2
○ 목포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31
○ 목포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	38
○ 목포시 반값관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1
○ 목포시 목포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43
○ 목포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8
○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50
○ 목포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52
○ 목포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	55
○ 목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57
○ 목포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4
○ 목포시 우리동네청결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7
○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69
○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70
○ 목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80
○ 목포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82
○ 목포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86
○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건축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88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96
○ 목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	98
○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0
○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2
○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4

-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06
-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8
-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9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129
-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50

고시 · 공고

- 전남어촌지역 시장 · 군수 협의회 폐지 고시 157
-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163
- 2025년 외달도 해수욕장 개장 공고 164

회람							
----	--	--	--	--	--	--	--

목포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914 호

목포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목포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다.
「목포시의회 비공무원 공정채용지침」 및 「목포시 비공무원 공정채용규정」에 따른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목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법 제27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종합청렴도 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추진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부패·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표창) 의장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와 시민에게 「목포시의회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915 호

목포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 소속 공무원, 공무원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2. “갑질 행위”란 목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직책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마.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처리를 지시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 방해 행위

3.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한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피해자”란 갑질 행위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

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① 목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갑질 행위 근절과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갑질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의회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시행 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의장이 갑질 근절 대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피해자 또는 갑질 행위를 목격하거나 갑질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사건 관계인은 의장에게 갑질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와 갑질 내용

3.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대리인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제7조(갑질 신고의 처리 등) ① 의장은 갑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하 “전담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팀의 장은 갑질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 및 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의장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갑질 행위자와의 업무분장, 업무공간 분리 등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갑질 피해 상담, 심리 치료 등 피해자 회복 지원

3. 피해자의 긴급보호 등 지원체계 구축

4. 피해자 법률 지원

5. 그 밖에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및 비밀 보장) ① 피해자 및 신고자는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 등의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누설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징계 처분 등) ① 의장은 의원이 갑질 행위자로 확인된 경우 「목포시의회의 규칙」 제82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무원 등이 갑질 행위자로 확인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갑질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비밀 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보복행위 및 허위 신고) ① 피해자 및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의원과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경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④ 의장은 피해자와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이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실태조사)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갑질 행위 피해와 관련하여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상·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갑질 행위 예방 교육)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갑질 행위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916 호

목포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목포시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지원관”이란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및 사무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지원관 배치 등) ① 목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사무국 또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배치·근무실적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는 실무경력 및 전공 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4조(근무기간) ① 정책지원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업무태만, 근무수행능력 부족, 임용결격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된 정책지원관의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르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목포시의회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5조(직무 범위)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 및 전문위원의 관리를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되, 최종적 지휘 및 감독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

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수집·분석 및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시정 질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자료 작성·참석 지원
6.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7.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수집·조사·분석 및 지원
8. 의원외교·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9.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10.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6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지원이 포함된 사항
5. 제5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

제7조(근무실적평가)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5에 따라 매년 정책지원관의 근무실적평가를 하고 이를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는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 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 처리능력, 청렴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③ 평가자는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제8조(비밀엄수 의무)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교육훈련) ①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참석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고충 처리 지원)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그 밖에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목포시 의정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917 호

목포시 의정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의정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보조금의 지원) (생 략) <u><신 설></u>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u>

목포시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918 호

목포시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관리하는 재산을 말한다.
2. “재산관리관”이란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재산의 관리·처분을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공유재산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유재산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표지판의 설치 등)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와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위치
2. 공유재산 관리부서 및 연락처
3. 그 밖에 목포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공유재산의 변경, 처분 등 변동사항 발생 시 표지판을 재설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 표지판은 시민들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무단 점유·사용 등의 불법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입간판, 현수막 등으로 설치하고 규격은 공유재산의 위치, 지형 등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919 호

목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재능의 사회적 환원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 및 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수산, 축산, 식품, 건축, 미용,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4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목포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920 호

목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목포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 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목포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목포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면 이상인 경우 최소 1면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제6조제2항 관련)

1. 바닥면 도안



2. 안내표지판 도안



목포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921 호

목포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노숙”을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노숙 등의 예방과 사후관리 및 감소 방안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활·자립에 관한 주요사업계획

4. 여성·장애인·노인 등 취약 노숙인 등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숙인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숙인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5호) 중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으로 한다.

4. 노숙인 등의 자활·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사업

5. 여성·장애인·노인 등 고위험군 노숙인 등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사업

6. 인식개선 및 노숙 예방을 위한 지원 및 교육·홍보사업

7.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보수교육) 시장은 필요시 노숙인 시설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도록 지원하며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인권교육)”을 “(노숙인 인권 보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u>조례는</u> <u>노숙인 등의</u> <u>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u> <u>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u> <u>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u> <u>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u>조례는 「노숙인 등의</u> <u>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u> <u>따라 노숙</u> ----- -----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u><신 설></u> ②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u>시장은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u> <u>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여야 한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u>시장은</u> <u>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u> <u>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u> <u>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u>시장은</u> <u>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u> <u>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u>
② <u>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u> <u>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u> <u>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u> <u>있다.</u>	② <u>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u> <u>포함되어야 한다.</u> 1. <u>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u> 2. <u>노숙 등의 예방과 사후관리 및</u> <u>감소 방안</u> 3. <u>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활·자립에</u> <u>관한 주요사업계획</u> 4. <u>여성·장애인·노인 등 취약 노숙인</u>

③ 제2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4. 노숙인 등의 자활·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

<신설>

<신설>

<신설>

5.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업

등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숙인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숙인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제6조(지원대상 사업) -----

-----.

1. ~ 3. (현행과 같음)

4. 노숙인 등의 자활·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사업

5. 여성·장애인·노인 등 고위험군
노숙인 등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업

6. 인식개선 및 노숙 예방을 위한
지원 및 교육·홍보사업

7.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

8. ----- 사회
복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

<신 설>

제9조의2(보수교육) 시장은 필요시
노숙인 시설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도록 지원하며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10조(인권교육) (생 략)

제10조(노숙인 인권 보호) (현행과 같음)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922 호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
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조(「목포시 지방재정의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목포시 지방재정의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한다”를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된다.<2024. 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를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제4조(「목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의 개정)

목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목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목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위촉한다.”를 각각 “위촉하고,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의 개정)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후단 중 “한다.”를 “하고,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 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 .	제3조 (구성) ①----- ----- ---- <u>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조(「목포시 지방재정의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내지 15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u>한다</u>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 ----- <u>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 -----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된다.<2024.07.08.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신 설>

② (생 략)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조(「목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구성) ① ----- -----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 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목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4조 (자문기구의 구성)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4조 (자문기구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협의회는 15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주무부서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각급 기관 및 복지시설, 청소년 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 · 3.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행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실행위원회는 15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주무부서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각급 기관 및 복지시설, 청소년 단체 등의 업무관련 실무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

----- 위촉하고,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 3. (현행과 같음)

③-----
-----.

1. -----

----- 위촉하고,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목포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923 호

목포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문화·체육·관광 분야 행사에 이에스지(ESG)를 도입하여 친환경적 개최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의 가치 평가 요소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문화·체육·관광 행사”란 목포시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으로 개최하는 축제, 박람회, 전시회, 공연, 대회 등의 행사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목포시 문화·체육·관광 행사를 개최·운영하는데 있어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탄소배출 및 폐기물 저감 등 환경적 고려
2.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적 고려
3. 투명성 및 협업 등 거버넌스의 고려
4. 그 밖에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사항

제4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행사의 계획과 추진에 이에스지(ESG)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3. 문화·체육·관광 분야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 프로그램
4. 문화·체육·관광 분야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과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 분야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평가 및 지원) 시장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행사에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양한 이에스지(ESG) 실천 관련 정보를 수록한 안내서, 홍보 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반값관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924 호

목포시 반값관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 반값관광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목포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반값관광 사업을 통하여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목포 반값관광 사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의 범위에서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는 제외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목포 반값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반값관광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반값관광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반값관광 추진에 따른 목포사랑상품권 발행·지급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제3조의4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추진사업) ① 시장은 목포 반값관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홍보활동 및 행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컨설팅, 회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 및 보상금에 관한 사항
4. 사업 추진에 따른 목포사랑상품권 지급에 관한 사항
5. 질서, 친절, 위생, 지역 환경정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환수) 시장은 지원받은 사람이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목포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925 호

목포시 목포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목포학을 진흥하고 목포 정체성을 정립하며 시민에게 교육 확산하여 목포 시민의 자긍심을 높여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목포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목포학”이란 목포시와 관련된 인물·지리·역사·사회·문화·예술·자연환경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목포시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학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학의 연구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목포학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연구 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목포학 진흥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목포학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목포학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목포학 관련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목포학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4. 목포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목포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목포학 진흥사업) 시장은 목포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포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
2. 목포학 연구인력 양성
3. 목포학 관련 연구 성과의 활용 및 확산
4. 목포학 연구단체 연결망 구축 및 학술행사 지원
5. 목포학 강좌 개설 및 운영
6. 국내외 지역학 관련 연구 교류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목포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목포시 소재의 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탁) ① 시장은 목포학의 정립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과 절차 등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목포학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목포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수 있다.

1. 목포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목포학 진흥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목포학 관련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목포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목포시의회 의원
2. 목포학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목포학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2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자문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926 호

목포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① 시장은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
3.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
4. 이스포츠 선수·동호인·동호회 육성 및 지원
5. 관내 학교와 연계한 이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6. 국내외 이스포츠 교류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스포츠 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
2. 이스포츠 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이스포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927 호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전단 중 “1년으로 하되, 4회”를 “2년으로 하되, 1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촉 횟수에 상관없이
재위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기존 위촉 강사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 (강사) ① ~ ④ (생 략) ⑤ 위촉 강사의 임기는 <u>1년으로 하되,</u> <u>4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u> <u>2회 이상 공개모집에 새로운 강사가</u> <u>없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u> ⑥ (생 략)	제9조 (강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u>2년으로 하되,</u> <u>1회-----</u> . <u>다만</u> <u>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신청자가</u> <u>없는 경우에는 위촉 횟수에 상관 없이</u> <u>재위촉할 수 있다.</u> ⑥ (현행과 같음)

목포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928 호

목포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양성·활용 및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을 위한 목포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여성과학기술인 (이하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라 한다)의 현황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여성과학기술인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현황 및 지원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학·공학(이하 “이공계”라 한다)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능력을 향상

시킴을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이 국내·외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연수 또는 연구 활동을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취업·재취업 지원)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이 취업하거나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기관 및 단체 지원) 시장은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을 위한 기관
2. 여성의 이공계 진학 유도 및 이공계 분야 진출 동기 유발 프로그램 개발·운영 기관
3. 이공계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기관
4.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기관
5.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관련 기관 및 단체

제11조(포상) 시장은 과학기술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여성 및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관련 기관·단체에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929 호

목포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목포시 섬주민의 생활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정주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생필품 등의 해상물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섬”이란 만조(滿潮)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관할 도서를 말한다.
2. “섬주민”이란 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등록증에 주소지가 섬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해상물류비”란 해상 왕복 도선비 또는 화물선 임차료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섬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해상물류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액화석유가스(LPG)
2. 난방용 유류
3. 분뇨수거 차량
4. 농수산물 등 생필품

② 해상물류비는 영업목적이 아닌 섬주민 자가소비목적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③ 제1항제3호 분뇨수거 차량 지원에 관해서는 「목포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 또는 단체·기관(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5조(업무협약 체결) 시장은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운송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지원받은 비용의 부정사용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930 호

목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목포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목포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공공성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먹거리”란 시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2. “먹거리 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먹거리계획”이란 지역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연계되어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4.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시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5.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해 목포시, 관계 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력체계를 설치하여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에 있어 지역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먹거리 계획의 수립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시민사회,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목포시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먹거리관련 생산·소비·유통·폐기 등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7. 도농상생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먹거리 종합계획 시행) ① 시장은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2. 시민 먹거리 유통체계와 현황, 먹거리 안전과 건강에 관한 사항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처리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역 먹거리의 소비촉진) ①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가 지역 내에서 원활하게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공공시설 및 기업 등의 급식과 보육 및 복지 시설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한 급식에 지역 먹거리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지역 먹거리 소비촉진을 위해 시민들의 영양불균형 해소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법인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직거래장터 활성화) ① 시장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수산물 생산과 소득 증대를 위해 직거래장터(이하 “장터”라 한다)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터 개설시 국공유지 사용,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농수산물식품의 순회 수집·소포장·홍보·캠페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아이디어 제안 등) ① 시장은 목포시 먹거리와 관련된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아이디어 제출 등을 제안하게 할 수 있다.

② 아이디어 제안 등은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실행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먹거리 보장 위원회 설치) 시장은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목포시 먹거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 위원” 이라한다)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목포교육지원청, 영양교사·교사 등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생산자 단체, 출하조직, 농업인 단체의 대표
4. 보건복지, 환경, 소비자 관련 단체의 대표
5. 지역 먹거리 분야별(생산,유통,소비,복지,환경 등)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7조의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로 관계인의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④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해서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931 호

목포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실현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드론, 로봇, 자동화기술 등을 활용하여 농업 전반의 생산, 유통, 가공, 경영 등에 혁신을 도모하는 농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지속적 발전과 현장 확산을 위한 종합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 종합계획)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사업 발굴 및 육성
2. 용수, 부지정리, 전기, 도로 등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유통 촉진, 경영규모의 확대
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기획·유통·광고·회계·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 개발 촉진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기회 제공) 시장은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우리동네청결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932 호

목포시 우리동네청결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우리동네청결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우리동네청결지킴이”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감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 ① 우리동네청결지킴이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동별 10명 이내
범위에서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올바른 쓰레기 배출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실천 의지가 강한 사람
2. 평소 청소행정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3.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시장은 우리동네청결지킴이로 위촉된 사람에게 우리동네청결지킴이증을 발급한다.

제4조(임기) 우리동네청결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임무) 우리동네청결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활동
2.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위한 주민 계도 및 캠페인 활동
3. 상습 투기 지역 및 취약지 상시 순찰 및 정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해촉) ① 시장은 우리동네청결지킴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우리동네청결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활동 실적이 저조하거나 우리동네청결지킴이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우리동네청결지킴이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우리동네청결지킴이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우리동네청결지킴이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시장은 우리동네청결지킴이의 청소 행정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 지식 제공, 자문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933 호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목포시가 무안군, 영암군, 신안군과 상생협력 MOU를 체결한 경우,
해당 주민에 대하여 목포시민에 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934 호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의 개정)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조(「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의 개정)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하고,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목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목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위촉 위원 of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목포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각각 “구성하며, 위촉 위원 of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목포시 생활임금 조례」의 개정)

목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하며, 위촉 위원 of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목포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의 개정)

목포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목포시 중소기업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있다.”를 “있으며, 위촉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 (운영위원회) ① (생략)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5. (생략) ③ ~ ⑧ (생략)	제4조 (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위촉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조(「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관광문화교육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하도록 하여야 <u>한다</u> .	-----하고, <u>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목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3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 .	제3조 (협의회의 구성) ① ----- ----- ----- <u>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목포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 .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 ----- ----- <u>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u>

② · ③ (생 략) 제8조 (실무위원회) ① (생 략)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u>구성한다</u>. ③ · ④ (생 략)	<u>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 (실무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u>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③ · ④ (현행과 같음)
--	---

제5조(「목포시 생활임금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8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 구성 등)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호선한다</u>. ③ (생 략)	제8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호선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③ (현행과 같음)

제6조(「목포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역상권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 9. (생 략) ③ ~ ⑨ (생 략)	제5조(지역상권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 위촉하 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 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 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 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9. (현행과 같음)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7조(「목포시 중소기업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8조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운영) ① (생 략)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 ⑤ (생 략)	제18조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28조(요트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요트마리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5명 이상 8명 이내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요트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설치) ① ----- ----- ----- 있으며, 위촉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7조의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양수산환경국장이 되고 위원은 자원순환과장,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시의원 1명,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명, 민간인 전문가 1명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의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위촉하며, 위촉 <u>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u>

한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목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935 호

목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및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대상건축물 중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등을 파괴하거나 절단하거나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제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 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8조(해체신고 대상) ----- ----- ----- -----.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1. -----대 상건축물 중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등을 파괴하거나 절단하거나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제외)
2. (생략)	2. (현행과 같음)

목포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936 호

목포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을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4월말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확히 조사하여 DB로”를 “근거로 관리 지역으로 지정·고시(홈페이지 게시 등)하고”로 한다.

제19조 앞의 “제5장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을 삭제한다.

제25조 앞의 “제6장 예산 및 홍보”를 삭제한다.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로 하고,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하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안전관리요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시장은 안전관리요원 등이 안전관리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부상·상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제16조 앞의 “제4장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훈련”을 삭제한다.

제1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훈련

제2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제2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예산 및 홍보

제28조(중전의 제27조) 제2항제4호 중 “트위터, 아고라”를 “SNS”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시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u>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u> ② 전수조사된 지역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u>정확히 조사하여 DB로 관리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4장 안전관리요원</u> <u>모집·교육훈련</u> <u><신 설></u> <u>제16조 ~ 제18조 (생략)</u>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 ----- <u>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4월말까지)</u> ----- ----- -----. ② ----- ----- ----- ----- <u>근거로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홈페이지 게시 등)하고</u> -----. <u>제16조(안전관리요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시장은 안전관리요원 등이 안전관리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부상·상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 <u><삭 제></u> <u>제4장 안전관리요원</u> <u>모집·교육훈련</u> <u>제17조 ~ 제19조 (현행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u>

제19조(교육 및 훈련)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모집·선발한 안
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제5장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신설>

제19조 ~ 제24조 (생략)

제6장 예산 및 홍보

<신설>

제25조 · 제26조 (생략)

제27조(홍보) ① (생략)

② 제1항에 의한 홍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인터넷, 트위터, 아고라

5. ~ 8. (생략)

제19조(교육 및 훈련)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삭제>

제5장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제20조 ~ 제25조 (현행 제19조부
터 제24조까지와 같음)

<삭제>

제6장 예산 및 홍보

제26조 · 제27조 (현행 제25조 및
제26조와 같음)

제28조(홍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 SNS

5. ~ 8. (현행과 같음)

목포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937 호

목포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조심기간”이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목포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
3. “산불방지활동”이란 산불을 예방·대비·대응하고 산불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이란 실제 산불 예방 및 인명 구조 활동 등 산불방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산불방지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시장은 산불방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산불방지활동의 지원)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조심 기간 동안 산불방지활동을 하는 개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산불방지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건축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938 호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건축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포시 건축 조례」의 개정)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각각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조(「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

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개정)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각각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목포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의 개정)

목포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각각 “구성하며, 위촉 위원 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의 개정)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위촉 위원 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목포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각각 “구성하며, 위촉 위원 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목포시 건축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4명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 .	제6조(구성 등) ① ----- ----- <u>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조(「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u>구성한다</u> .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 <u>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조(「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	-----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생략)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민간인 전문가를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 포
함하여 구성한다.

③ ~ ⑦ (생략)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
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
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
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
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
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4조(「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①·② (생략)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호선한</u> <u>다</u> .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호선하며, 위촉 위</u> <u>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u> <u>「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u> <u>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u> <u>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u> <u>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5조(「목포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 ①·② (생 략)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 ⑥ (생 략)	제3조(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 <u>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 . ② ~ ④ (생 략)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 ----- <u>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직 위원으로 <u>구성한다</u> . 당연직 위원은 목포시 교통 관련 업무 소관 국장, 교통 관련 업무 과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당연직 위원은 목포 시 교통 관련 업무 소관 국장, 교통 관련 업무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 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1. ~ 4. (생 략) ③ (생 략)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구성하며, 위촉 위원의</u> <u>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u> <u>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u> <u>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u> <u>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u> <u>도록 하여야 한다.</u>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조 (「목포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목포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 회” 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 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 .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 ----- ----- ----- <u>구성</u> <u>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u> <u>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u> <u>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u> <u>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u>

② · ③ (생 략)

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939 호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영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서”를 “영 제51조의2제1
항제6호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영 제 51조의2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제6호----- ----- --. 1. ~ 3. (현행과 같음)

목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940 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제4조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 ----- ----- ----- -----.
1.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u><삭 제></u>
2. ~ 8. (생략)	2. ~ 8. (현행과 같음)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941 호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소속 장기근속 공무원 및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생략) 2. 퇴직 공무원 기념금품 지원 3. (생략) 4. 소속 장기근속 공무원 및 정년 · 명예퇴직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 지원 5. ~ 7. (생략)	제10조의3(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4. 공무원 ----- ----- ----- 5. ~ 7. (현행과 같음)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942 호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에게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을 연 1회 5만원 지급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지원사업)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② (생략)	제4조(지원사업)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에게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을 연 1회 5만원 지급</u>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943 호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에게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을 연 1회 50,000원을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보훈명예수당 지급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④ (생략)	제9조(보훈명예수당 지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에게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을 연 1회 50,000원을 지급한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944 호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중 “목포시에주소를”을 “목포시에 주소를”로 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 지원을 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여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 목포시에주소를 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다.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 ----- <u>목포시</u> <u>에 주소를</u> -----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제3조(급식지원 방법)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설></u>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여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945 호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표 1과 같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제2조2호”를 “제3조제2호”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이용시간) 도서관 이용시간은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 관리 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중 “넷째주”를 “넷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셋째주”를 “셋째”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자료의 대출 권수 및 기간 등 그 밖의 대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제9조 후단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별표 4”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필요한 재료비”를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별표 5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6과”를 “별표 2와”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를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로 한다.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장은 폐기 및 제적되는 자료를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3조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 등에 참여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용료 징수 기준(제10조 관련)**1. 시설사용료**

도서관명	시설명	기 준	금 액	비 고
시립도서관	시청각실	1회	30,000원	3시간 기준
어린이도서관	어린이극장	주간 (09:00 ~ 18:00)	30,000원	"
		야간 (18:00 ~ 22:00)	40,000원	
영어도서관	멀티룸 세미나룸 스터디룸	주간 (09:00 ~ 18:00)	30,000원	"
		야간 (18:00 ~ 22:00)	40,000원	
어울림도서관	문화교실 동아리실 시청각실	주간 (09:00 ~ 18:00)	30,000원	"
		야간 (18:00 ~ 22:00)	40,000원	

가. 기본 사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10,000원의 사용료 가산적용
 나.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를 받는다.

2. 복사 및 출력료

사 용 구 분		수 수 료	비 고
자료복사 (복사기 및 프린터)	A4	40원	1면당
	B4	50원	"
	A3	60원	"

3. 수강료

구 분	금 액	기 간	비고
프로그램 수강료	30,000원 이내	1개월	※재료비, 교재비 본인 부담

4.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사용료 전액감면
나. 수강료 감면기준

감 면 대 상	감면 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가족	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기타 개별법령에서 수강료 등을 면제를 규정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 및 교육급여수급자 가족	1/2 감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기타 개별법령에서 수강료 등을 면제를 규정한 경우	

[별표 2]

사용료 반환 기준(제12조 관련)

반환료명	반 환 사 유	반환금액
사용료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전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도서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일 1일전까지 사용 포기를 신청한 경우	
	사용일에 사용 포기를 신청한 경우	사용료의 50%
수강료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치지 못하여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수업시작 전 1일전까지 수강을 포기한 경우	
	총 수업시간 1/3이 지나기 전	수강료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 1/2이 지나기 전	수강료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 1/2이 지난 후	반환료 없음
	수업개시 후 도서관의 사정으로 인한 폐강하는 경우	잔여 수강일 산출하여 반환금액 산정

목포 ○○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제9조 관련)

– 113 –

■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사용료(수강료) 반환신청서(제12조 관련)

신청자	반환료명			
	단 체 명 (성 명)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반 환 료 (도서관에서 산정기재)		금	원정 (₩)	
제10조 의한 감면대상자 여부		감면, 비감면		
실제납부액	금 원정 (₩)			
사용(수강) 기 간	~			
계좌입금 통 장	거래은행		예금주명	
	계좌번호			
반환신청 사 유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목포시 ○○도서관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목포시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u>별표 1과 같다.</u>	제2조(명칭 및 위치) ----- ----- ----- <u>규칙</u> <u>으로 정한다.</u>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u>제2조2호</u> 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2. ~ 4. (생략)	제3조(정의) ----- -----. 1. ----- ----- <u>제3조제2호</u> -----. 2. ~ 4. (현행과 같음)
<u>제5조(이용시간) 도서관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이용자 편의 증진, 도서관 운영을 위해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u>	<u>제5조(이용시간) 도서관 이용시간은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 관리 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한다.</u>
제6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지정요일 및 정기 청소일 가. 시립도서관 및 어울림도서관 : 매월 둘째, <u>넷째주</u> 월요일	제6조(휴관) ① ----- -----. 1. ----- 가. ----- ----- <u>넷째</u> ---- -----

나. 어린이도서관 및 영어도
서관 :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

다. (생 략)

2. (생 략)

② (생 략)

제7조(자료의 대출) ① (생 략)

② 자료의 대출은 회원 1명당 5권 이내,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자료 반납을 지연한 경우에는 대출기간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관장은 도서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자료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9조(시설사용 신청)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용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이 경우 사용(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사용료 징수) ① (생 략)

나. -----
----- 셋째 ----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자료의 대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료의 대출 권수 및 기간 등 그 밖의 대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시설사용 신청) -----

----- 별지 제1호 서식-----
-.

제10조(사용료 징수) ① (현행과

② 도서관 시설을 사용 및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 하며,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과 징수기준, 감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프로그램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는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2조(사용료 반환)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 호 서식에 따른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5조(위탁운영자 선정) ① (생 략)

②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생 략)

제16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

같음)

② -----

----- 별표 1-----.
-----필요한 교
재비, 재료비 -----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료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지 제2호서
식 -----
-----.

③ ----- 별표 2와 ---
-.

제15조(위탁운영자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운영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장 신청을 받은 경우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 제적) ①·② (생 략)

<신 설>

----- 「목포시 사무
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
례」 제7조-----
-----.

제23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 제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장은 폐기 및 제적되는 자
료를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
례」 제3조에 따라 실시하는 사
업 등에 참여한 개인, 단체 또
는 기관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조례 제 3946 호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9조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을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
탁 등)으로 변경한다.

제19조 각 호의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을 “지정게시대”로 한다.

제19조를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수탁자는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부착 및 철거 대

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료 부과기준(별표 8)에 따라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별표 3 각 호의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을 “지정게시대”로 한다.

별지 제8호 각 호의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을 “지정게시대”로 한다.

별지 제9호 각 호의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을 “지정게시대”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부터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8은 2025. 7. 1.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5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비고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3,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30,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5㎡ 이하	15,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 ·약국 표지등(개당)	8,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면적 10㎡ 이하	35,000원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면적 10㎡ 이하	15,000원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15,000원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9,000원 10,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선박 - 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4,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4,000원	
타. 현수막 1) 일반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지정계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3,000원 1,000원	

파. 벽보(1건)	3,000원	
하. 전단(500매마다)	3,000원	
거. 전자게시대(1건)	3,000원	
너. 입간판	3,000원	
더.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5.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6. 현수막 지정게시대, 전자게시대 등 (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별표 8]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이용료 부과기준(제19조 제7항 관련)

시설물	현수막		비고
	이용료	신고 수수료	
현수막 지 정 게시대	현수막(10일 표시) - 9,900원(부가세 포함)/장	현수막 - 3,000원/장	

[별지 제8호서식]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	----------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제7호 및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무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관리인력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목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지정서

제	호
---	---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제7호 및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관리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관리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관리위탁지정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관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관리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 위탁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 ----현수막 지정게시대----- ----- -----현수막 지정게시대----- ----- ----- ---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수막 지정게시대----- ----- ---. ④ 현수막 지정게시대----- ----- -----현수막 지정게시대----- ----- -----. ⑤ ----- ----- -----현수막 지정게시대----- ----- ----- -----. ⑥ 수탁자는 게시할 광고물의
<신 설>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부착 및 철거 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료 부과기준(별표 8)에 따라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규칙 제 1892 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1374	737	35	80	194	328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356	726	35	80	187	328
	3급	1	1				
	4급	10	7	1	1	1	
	5급	70	33	3	3	8	23
	6급	274	165	6	15	41	47
	7급	355	218	18	21	43	55
	8급	341	161	6	26	49	99
	9급	305	141	1	14	45	104
연구직	계	14	7			7	
	연구관	2	1			1	
	연구사	12	6			6	
지도직	계	3	3				
	지도관						
	지도사	3	3				

[별표 2]

목포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계			1374	737	35	80	194	328
정무직		합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일반직 합계	1356	726	35	80	187	328
	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10	7	1	1	1	
		행정	2	2				
		기술	1			1		
		행정+기술	7	5	1		1	
	5급	소계	70	33	3	3	8	23
		행정	14	7	1			6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시설	14	11			2	1
		행정+사회복지+공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행정+사회복지+간호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5					5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공업+시설	5	3	1		1	
		행정+공업+농업+간호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시설	1					1
		공업+환경+시설	1				1	
		행정+시설+학예연구관	1	1				
		행정+공업+농업+농촌지도관	1	1				
		행정+공업+녹지+시설	1	1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2	1			1	
		행정+공업+환경+환경연구관	1				1	
		행정+보건+식품위생+간호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2		
		공업+보건+환경+환경연구관	1				1	
	6급	소계	274	165	6	15	41	47
		행정	57	31	5		2	19
		세무	7	7				
		사회복지	9	4				5
		방호	1				1	
		공업	2	1			1	
		해양수산	1	1				
		보건	1			1		
		시설	3	2			1	
		행정+세무	5	3			1	1
		행정+사회복지	26	13				13
		행정+전산	7	7				
		행정+농업+녹지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3					3
		행정+환경	5	5				
		행정+해양수산	4	4				
		행정+보건	3			3		
		행정+공업	6	3			3	
		행정+시설	43	36			7	
		행정+학예연구사	2				2	

		행정+농촌지도사	1					1
		공업+환경	2				2	
		공업+시설	3				3	
		공업+환경연구소	1				1	
		보건+식품위생	1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2			2		
		시설+건축운영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전산+사회복지	4					4
		행정+사회복지+수의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전산+시설	10	8			2	
		행정+전산+방송통신	4	3	1			
		행정+공업+시설	12	9			3	
		행정+공업+학예연구소	1	1				
		행정+녹지+시설	4	4				
		행정+해양수산+시설	5	5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행정+보건+간호	2			2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시설+사무운영	1				1	
		행정+녹지+시설+농촌지도사	1	1				
		공업+전기운영+기계운영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의료기술+약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약무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농업+환경+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수의+농촌지도사	2	2				
		행정+보건+시설+방재안전	1	1				
		공업+수의+환경+환경연구소	1				1	

		공업+보건+환경+환경연구사	1				1	
		운전	4	4				
		운전+기계운영	1	1				
		토목운영	1				1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1				1	
		전기운영+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4	3			1	
	7급	소계	355	218	18	21	43	55
		행정	107	56	16		9	26
		세무	22	21			1	
		사회복지	47	26				21
		전산	4	2	1		1	
		속기	1		1			
		방호	1				1	
		공업	25	10			15	
		농업	1	1				
		녹지	3	3				
		해양수산	6	6				
		보건	1			1		
		간호	11			9		2
		환경	5	3			2	
		시설	31	29			2	
		방송통신	4	4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10	4				6
		행정+전산	6	5			1	
		행정+공업	4	4				
		행정+농업	2	2				
		행정+녹지	2	2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간호	1			1		
		행정+환경	4	4				

		행정+시설	5	4			1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식품위생	1	1				
		행정+학예연구사	1				1	
		사회복지+시설	1	1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시설	3	2			1	
		공업+환경	1	1				
		보건+식품위생	4			4		
		보건+약무+간호	1			1		
		보건+간호	4			4		
		의료기술+간호	1			1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농업+수의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운전	16	15			1	
		건축운영	1				1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3				3	
		열관리운영	1				1	
	8급	소계	341	161	6	26	49	99
		행정	90	46	2		13	29
		세무	8	6			2	
		사회복지	57	21				36
		사서	2	2				
		속기	2		2			
		전산	4	4				
		공업	19	4		1	14	
		농업	1	1				
		녹지	3	3				
		해양수산	3	3				
		보건	4			4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6			6		
		간호	25			4		21
		환경	3	1			2	
		시설	26	19			7	
		방송통신	3	1	1		1	
		행정+사회복지	13					13
		행정+세무	5	5				
		행정+전산	2	2				
		행정+농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4	4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7	7				
		행정+방송통신	2	2				
		전산+방송통신	1	1				
		사회복지+시설	1	1				
		공업+환경	4	2			2	
		공업+시설	4	3			1	
		녹지+시설	1	1				
		보건+식품위생	2			2		
		보건+간호	4	1		3		
		의료기술+간호	2			2		
		시설+방재안전	2	2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전산+방송통신+시설	1	1				
		사회복지+간호	4	1		3		
		운전	14	12	1		1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3				3	
		화공운영	1				1	
	9급	소계	305	141	1	14	45	104
		행정	84	43			2	39

		세무	4	4				
		전산	3	3				
		사회복지	63	7				56
		사서	2	2				
		공업	17	3			14	
		녹지	4	4				
		해양수산	3	3				
		보건	3			3		
		식품위생	1			1		
		환경	6	3			3	
		시설	18	17			1	
		방송통신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15	6				9
		행정+전산	6	5			1	
		행정+사서	2	2				
		행정+공업	4	4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2	2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2	1			1	
		행정+시설	9	8			1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방송통신	1				1	
		사회복지+보건	3			3		
		공업+시설	2	2				
		보건+의료기술	3			3		
		보건+식품위생	1			1		
		방호	1	1				
		운전	19	9	1	3		6
		시설관리	1	1				
		전화상담운영	2	2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7				7	
		화공운영	1				1	
		사무운영	1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공업+시설	4	3			1	
		공업+환경+시설	1				1	
연구직		연구직 합계	14	7			7	
	연구관	연구관 합계	2	1			1	
		행정+학예연구관	1				1	
		행정+시설+학예연구관	1	1				
	연구사	연구사 합계	12	6			6	
		학예연구사	9	5			4	
		환경연구사	2				2	
		기록연구사	1	1				
지도직		지도직 합계	3	3				
	지도사	지도사 합계	3	3				
		농촌지도사	3	3				

신.구조문 대비표(별표1)

현행								개정안							
(별표1)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제2조 관련)								(별표1)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의회	직속	사업소	등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의회	직속	사업소	등
총 계		1,374	734	35	80	194	331	총 계		1,374	737	35	80	194	328
정무직	계	1	1	0	0	0	0	정무직	계	1	1	0	0	0	0
	시장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354	723	35	80	185	331	일반직	계	1,356	726	35	80	187	328
	3급	1	1						3급	1	1				
	4급	10	7	1	1	1			4급	10	7	1	1	1	
	5급	71	34	3	3	8	23		5급	70	33	3	3	8	23
	6급	273	164	6	15	41	47		6급	274	165	6	15	41	47
	7급	347	211	18	21	43	54		7급	355	218	18	21	43	55
	8급	341	159	6	26	49	101		8급	341	161	6	26	49	99
	9급	311	147	1	14	43	106		9급	305	141	1	14	45	104
연구직	계	16	7	0	0	9	0	연구직	계	14	7	0	0	7	0
	연구관	1				1			연구관	2	1			1	
	연구사	15	7			8			연구사	12	6			6	
지도직	계	3	3	0	0	0	0	지도직	계	3	3	0	0	0	0
	지도관	0							지도관	0					
	지도사	3	3						지도사	3	3				

신.구조문 대비표(별표2)

현행								개정안									
(별표2) 목포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별표2)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	작성 기관	사업소	등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	작성 기관	사업소	등
총계			1374	734	35	80	194	331	총계			1374	737	35	80	194	328
장부직		합계	1	1					장부직		합계	1	1				
		시장	1	1							시장	1	1				
일반직		일반직 합계	1354	723	35	80	185	331	일반직		일반직 합계	1356	726	35	80	187	328
	3급	소계	1	1						3급	소계	1	1				
		행정	1	1							행정	1	1				
	4급	소계	10	7	1	1	1			4급	소계	10	7	1	1	1	
		행정	2	2							행정	2	2				
		기술	1			1					기술	1			1		
		행정+기술	7	5	1		1				행정+기술	7	5	1		1	
	5급	소계	71	34	3	3	8	23		5급	소계	70	33	3	3	8	23
		행정	14	7	1			6			행정	14	7	1			6
		시설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공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시설	14	11			2	1			행정+시설	14	11			2	1
		행정+회계연구관															
		공업+시설															
		행정+사회복지+공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공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현행									개정안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	직속 기관	사업소	등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	직속 기관	사업소	등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행정+사회복지+간호	2					2			행정+사회복지+간호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5					5			행정+사회복지+시설	5					5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공업+시설	5	3	1		1				행정+공업+시설	5	3	1		1	
		행정+공업+농업+간호	1					1			행정+공업+농업+간호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시설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보건+간호															
		공업+보건+환경															
		공업+환경+시설	1				1				공업+환경+시설	1				1	
		행정+시설+학예연구관	2	2							행정+시설+학예연구관	1	1				
		행정+공업+농업+농촌지도관	1	1							행정+공업+농업+농촌지도관	1	1				
		행정+공업+복지+시설	1	1							행정+공업+복지+시설	1	1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1		1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2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2	1			1	
		행정+공업+환경+환경연구관	1				1				행정+공업+환경+환경연구관	1				1	
		행정+보건+식품위생+간호	1			1					행정+보건+식품위생+간호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2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2		
		공업+보건+환경+환경연구관	1				1				공업+보건+환경+환경연구관	1				1	
6급		소계	273	164	6	15	41	47	6급		소계	274	165	6	15	41	47
		행정	56	30	5		2	19			행정	57	31	5		2	19
		세무	7	7							세무	7	7				
		사회복지	9	4				5			사회복지	9	4				5
		방호	1				1				방호	1				1	
		공업	2	1			1				공업	2	1			1	
		해양수산	1	1							해양수산	1	1				
		보건	1			1					보건	1			1		

현 행									개 정 안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시설	3	2			1				시설	3	2			1	
		행정+세무	5	3			1	1			행정+세무	5	3			1	1
		행정+사회복지	26	13				13			행정+사회복지	26	13				13
		행정+전산	7	7							행정+전산	7	7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녹지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3					3			사회복지+보건+간호	3					3
		행정+환경	5	5							행정+환경	5	5				
		행정+해양수산	4	4							행정+해양수산	4	4				
		행정+보건	3			3					행정+보건	3			3		
		행정+공업	6	3			3				행정+공업	6	3			3	
		행정+시설	42	35			7				행정+시설	43	36			7	
		행정+화재연구사	2				2				행정+화재연구사	2				2	
		행정+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촌지도사	1					1
		공업+환경	2				2				공업+환경	2				2	
		공업+시설	3				3				공업+시설	3				3	
		공업+환경연구사	1				1				공업+환경연구사	1				1	
		보건+식품위생	1			1					보건+식품위생	1			1		
		보건+약무	1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2			2					보건+간호	2			2		
		시설+건축운영	1	1							시설+건축운영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전산+사회복지	4					4			행정+전산+사회복지	4					4
		행정+사회복지+수익	1					1			행정+사회복지+수익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전산+시설	10	8			2				행정+전산+시설	10	8			2	
		행정+전산+방송통신	4	3	1						행정+전산+방송통신	4	3	1			
		행정+공업+시설	12	9			3				행정+공업+시설	12	9			3	
		행정+공업+화재연구사	1	1							행정+공업+화재연구사	1	1				
		행정+녹지+시설	4	4							행정+녹지+시설	4	4				
		행정+해양수산+시설	5	5							행정+해양수산+시설	5	5				

현행								개정안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	작성 기관	사업소	동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	작성 기관	사업소	동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행정·보건·간호	2			2					행정·보건·간호	2			2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시설·방재안전															
		행정·시설·학예연구사	1	1													
		행정·시설·사무운영	1				1				행정·시설·사무운영	1				1	
		행정·농지·시설·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지·시설·농촌지도사	1	1				
		공업·보건·환경연구사															
		공업·전기운영·기계운영	1				1				공업·전기운영·기계운영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의료기술·약무·간호	1			1					의료기술·약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약무	1			1					보건·의료기술·약무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농업·환경·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환경·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수위·농촌지도사	2	2							행정·농업·수위·농촌지도사	2	2				
		행정·보건·시설·방재안전	1	1							행정·보건·시설·방재안전	1	1				
		공업·수위·환경·환경연구사	1				1				공업·수위·환경·환경연구사	1				1	
		공업·보건·환경·환경연구사	1				1				공업·보건·환경·환경연구사	1				1	
		운전	4	4							운전	4	4				
		운전·기계운영	1	1							운전·기계운영	1	1				
		토목운영	1				1				토목운영	1				1	
		건축운영															
		통신운영															
		전기운영	2				2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1				1				기계운영	1				1	
		전기운영·기계운영	1				1				전기운영·기계운영	1				1	
		전기운영·사무운영															
		사무운영	4	3			1				사무운영	4	3			1	
7급	소계		347	211	18	21	43	54	7급	소계		355	218	18	21	43	55

현 행									개 정 안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종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	작속 기관	산업	동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종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	작속 기관	산업	동
		행정	106	54	16		9	27			행정	107	56	16		9	26
		세무	22	21			1				세무	22	21			1	
		사회복지	45	24				21			사회복지	47	26				21
		전산	4	2	1		1				전산	4	2	1		1	
		숙기	1		1						숙기	1		1			
		방호	1				1				방호	1				1	
		공업	24	10			14				공업	25	10			15	
		농업	1	1							농업	1	1				
		녹지	3	3							녹지	3	3				
		해양수산	5	5							해양수산	6	6				
		보건	1			1					보건	1			1		
		의료기술															
		간호	9			9					간호	11			9		2
		환경	5	3			2				환경	5	3			2	
		시설	29	27			2				시설	31	29			2	
		방송통신	4	4							방송통신	4	4				
		행정+세무	3	3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10	4				6			행정+사회복지	10	4				6
		행정+전산	6	5			1				행정+전산	6	5			1	
		행정+공업	4	4							행정+공업	4	4				
		행정+농업	2	2							행정+농업	2	2				
		행정+녹지	2	2							행정+녹지	2	2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간호	1			1					행정+간호	1			1		
		행정+환경	4	4							행정+환경	4	4				
		행정+시설	5	4			1				행정+시설	5	4			1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식품위생	1	1							행정+식품위생	1	1				
		행정+회계연구사	1				1				행정+회계연구사	1				1	
		사회복지+시설	1	1							사회복지+시설	1	1				

현행									개정안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	직속 기관	사업	동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	직속 기관	사업	동
		전산+방송통신	2	2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시설	3	2			1				공업+시설	3	2			1	
		공업+환경	1	1							공업+환경	1	1				
		보건+식품위생	4			4					보건+식품위생	4			4		
		보건+약무+간호	1			1					보건+약무+간호	1			1		
		보건+간호	4			4					보건+간호	4			4		
		의료기술+간호	1			1					의료기술+간호	1			1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농업+수역	1	1							행정+농업+수역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운전	16	15			1				운전	16	15			1	
		위생															
		토목운영															
		건축운영	1				1				건축운영	1				1	
		전기운영	3				3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3				3				기계운영	3				3	
		열관리운영	1				1				열관리운영	1				1	
		사무운영															
	8급	소계	341	159	6	26	49	101		8급	소계	341	161	6	26	49	99
		행정	90	46	2		13	29			행정	90	46	2		13	29
		세무	8	6			2				세무	8	6			2	
		사회복지	57	21				36			사회복지	57	21				36
											사서	2	2				
		속기	2		2						속기	2		2			
		전산	4	4							전산	4	4				
		공업	19	4		1	14				공업	19	4		1	14	
		농업	1	1							농업	1	1				
		녹지	3	3							녹지	3	3				
		해양수산	4	4							해양수산	3	3				
		보건	4			4					보건	4			4		

현행								개정안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	작성 기관	산업	등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	작성 기관	산업	등
		식품위생	1			1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6			6					의료기술	6			6		
		간호	27			4		23			간호	25			4		21
		환경	3	1			2				환경	3	1			2	
		시설	26	19			7				시설	26	19			7	
		방송통신	3	1	1		1				방송통신	3	1	1		1	
		행정+전산+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	13					13			행정+사회복지	13					13
		행정+세무	5	5							행정+세무	5	5				
		행정+전산	1	1							행정+전산	2	2				
		행정+농업	1	1							행정+농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4	4							행정+보건	4	4				
		행정+환경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7	7							행정+시설	7	7				
		행정+방재안전															
		행정+방송통신	2	2							행정+방송통신	2	2				
		전산+방송통신	1	1							전산+방송통신	1	1				
		사회복지+시설	1	1							사회복지+시설	1	1				
		공업+환경	4	2			2				공업+환경	4	2			2	
		공업+시설	4	3			1				공업+시설	4	3			1	
		복지+시설	1	1							복지+시설	1	1				
		보건+식품위생	2			2					보건+식품위생	2			2		
		보건+간호	4	1		3					보건+간호	4	1		3		
		의료기술+간호	2			2					의료기술+간호	2			2		
		시설+방재안전	1	1							시설+방재안전	2	2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전산+방송통신+시설	1	1							전산+방송통신+시설	1	1				
		사회복지+간호	4	1		3					사회복지+간호	4	1		3		

현행									개정안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	직속 기관	사업소	동
		방호															
		운전	14	12	1		1				운전	14	12	1		1	
		위생															
		건축운영															
		통신운영															
		전기운영	2				2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3				3				기계운영	3				3	
		열관리운영															
		항공운영	1				1				항공운영	1				1	
		사무운영															
9급		소계	311	147	1	14	43	106	9급		소계	305	141	1	14	45	104
		행정	84	41			2	41			행정	84	43			2	39
		세무	4	4							세무	4	4				
		전산	3	3							전산	3	3				
		사회복지	70	14				56			사회복지	63	7				56
		사서	5	5							사서	2	2				
		공업	17	3			14				공업	17	3			14	
		농업															
		녹지	4	4							녹지	4	4				
		해양수산	3	3							해양수산	3	3				
		보건	4			4					보건	3			3		
		식품위생	1			1					식품위생	1			1		
		환경	4	3			1				환경	6	3			3	
		시설	21	20			1				시설	18	17			1	
		방송통신	1				1				방송통신	1				1	
		행정+세무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10	1				9			행정+사회복지	15	6				9
		행정+전산	6	5			1				행정+전산	6	5			1	
		행정+사서	1	1							행정+사서	2	2				
		행정+공업	4	4							행정+공업	4	4				

현행								개정안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	작속 기관	사업소	동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	작속 기관	사업소	동
		행정+농업	1	1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2	2							행정+녹지	2	2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2	1			1				행정+환경	2	1			1	
		행정+시설	8	7			1				행정+시설	9	8			1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방송통신	1				1	
		사회복지+보건	3			3					사회복지+보건	3			3		
		공업+시설	3	2			1				공업+시설	2	2				
		시설+방재안전	1	1													
		보건+의료기술	3			3					보건+의료기술	3			3		
											보건+식품위생	1			1		
		방호	1	1							방호	1	1				
		운전	19	9	1	3	6				운전	19	9	1	3	6	
		시설관리	1	1							시설관리	1	1				
		건축운영															
		전화상담운영	2	2							전화상담운영	2	2				
		전기운영	2				2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7				7				기계운영	7				7	
		항공운영	1				1				항공운영	1				1	
		사무운영	2	1			1				사무운영	1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공업+시설	4	3			1				행정+공업+시설	4	3			1	
											공업+환경+시설	1				1	
연구직		연구직 합계	16	7			9		연구직		연구직 합계	14	7			7	
	연구관	연구관 합계	1				1			연구관	연구관 합계	2	1			1	
		행정+학예연구관	1				1				행정+학예연구관	1				1	
											행정+시설+학예연구관	1	1				
연구사		연구사 합계	15	7			8		연구사		연구사 합계	12	6			6	

현행								개정안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학예연구사	10	6			4				학예연구사	9	5			4	
		환경연구사	4				4				환경연구사	2				2	
		기록연구사	1	1							기록연구사	1	1				
지도직		지도직 합계	3	3					지도직		지도직 합계	3	3				
	지도사	지도사 합계	3	3						지도사	지도사 합계	3	3				
		농촌지도사	3	3							농촌지도사	3	3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30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이 상 진

목포시 규칙 제 1893 호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립도서관: 목포시 용당로160번길 32
2. 어린이도서관: 목포시 옥암로186번길 30-7
3. 영어도서관: 목포시 옥암로186번길 30-11
4. 어울림도서관: 목포시 용해지구로 31

제3조(이용시간) ① 도서관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이용자 편의 증진, 안전, 관리 상황 등을 감안하여 각 도서관 운영상 필요시에는 제1항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삼가하여야 한다.

1. 대출자료 이외의 도서관 자료를 반출하거나 무인반납기 또는 자료실 담당자 확인을 거치지 않는 반납 행위
2. 도서관 자료·비품·시설 등 훼손하는 행위
3. 도서관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를 침해하거나, 도서관 내 정보 기기로 악성코드 배포, 불법 소프트웨어 및 동영상 다운로드 등 정보보안에 위해를 주는 행위
4. 도서관 내에서 흡연, 음주, 고성방가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
5. 도서관 내에서 타인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스토킹, 지속적인 응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행, 사전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 촬영 행위
6. 도서관 규정에 근거한 직원의 정당한 요청에 불응하는 행위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판단한 행위

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즉시 퇴관을 명하거나 그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열람과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회원자격)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국민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2. 목포시 소재 기관이나 단체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자

제6조(회원가입) ①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목포시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 실

명 인증 후 회원가입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다만, 영유아 및 초등학교생은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이 어려운 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회원가입 신청자에 대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회원증(모바일 회원증 포함)을 발급한다.

③ 회원증은 자료 대출 시에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

④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회원은 개인의 인적 사항 등에 변동이 있을 시 도서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제7조(대출권수 및 기간) 대출권수는 회원 1명당 5권 이내,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은 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대출권수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대출의 제한) 관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
2. 참고자료 및 중요 문헌집
3. 연속간행물, 신문 등 비치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대출자료의 반납) ① 대출자료의 반납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② 관장은 대출자료의 반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출기간 중일지라도 대출자료를 반납시킬 수 있다.

제10조(대출 정지) 대출자료의 반납이 연체될 경우 자료 반납기한 당일부터 연체 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복사 및 출력) ① 자료의 복사 및 출력을 원하는 사람은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 소장 자료에 한하며, 복사의 범위는 「저작권법」에 의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할 수 없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예상되는 자료
3. 기타 관장이 복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수행상 또는 법률에 의한 증거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복사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 및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서관 이용시간 (제3조 관련)

도서관명	시 설 명	이용시간		비고
시 립 도 서 관	종합자료실, 열람실·고시실, 전자기기 전용실	09:00 ~ 22:00		
	어린이자료실, 족보실, 디지털자료실, 전시갤러리, 시청각실	09:00 ~ 18:00		
어린이도서관	열람실, 어린이극장	09:00 ~ 18:00		
영 어 도 서 관	종합자료실	09:00 ~ 18:00		
어울림도서관	일반자료실, 멀티미디어실	평일	09:00 ~ 22:00	
		주말	09:00 ~ 18:00	
	어린이자료실	평일	09:00 ~ 18:00	
		주말		

※

장난감도서관은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름.

■ 신규제정규칙 [별지 제1호서식]

회원가입 신청서 (제6조 관련)

성명		연락처	휴대폰	
생년월일			SMS수신	☐ 동의 ☐ 미동의
성별	☐ 남 ☐ 여	주소		
개인정보취급	목포000도서관의 책이음(자관) 회원가입 및 통합도서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상세 설명 뒷면 참조)를 활용함에 동의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법정대리인동의	14세 미만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연락처 :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목포 000도서관 귀하				
제출서류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류 (14세 미만)			

<회원준수사항>

1. 대출은 1회 00권까지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00일, 연장 불가합니다.
2. 대출받은 자료의 훼손이나 분실 시,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며, 품질이나 절판의 경우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합니다.
3. 대출한 도서의 반납이 지연될 경우, 지연된 날짜만큼 대출이 정지됩니다.

(뒷면계속)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하나의 회원증으로 통합도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의 책이음(자관)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이용, 개인식별, 공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합니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주소, 사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회원 탈퇴시까지 보유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책이음(자관) 회원가입을 제한 하나 회원가입이 필요하지 않는 다른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개인정보의 3자(타 공공도서관)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가. 책이음 회원 : 국립중앙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제공 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제공 책이음 누리집(<http://book.nl.go.kr>)에서 확인 가능]

나. 자관 회원 : 목포어울림도서관, 목포영어도서관, 목포시립도서관, 목포어린이도서관, 목포시 작은도서관 [목포시 작은도서관 현황은 목포시통합도서관 누리집(<http://mokpolib.or.kr>)에서 확인 가능]

2. 개인정보 제공목적 : 통합도서서비스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이용

3.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주소

4. 보유기간 : 회원 탈퇴시까지 보유

5.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책이음(자관)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14세 미만의 아동의 가입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목포시 고시 제2025-105호

전남어촌지역시장 · 군수협의회 폐지 고시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 구성) 및 제175조(협의회 규약 변경 및 폐지)에 따라 목포시의회에 보고된 「전남어촌지역시장 · 군수협의회」 폐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목 포 시 장

1. 건 명 : 전남어촌지역시장 · 군수협의회 폐지

2. 내 용

- 목포시는 「전남어촌지역시장 · 군수협의회」를 폐지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목포시의회 제398회 정례회에 보고하고, 협의회 폐지에 대한 고시를 이행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 제175조(협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4. 문 의 : 목포시청 수산산업과 수산산업팀(☎061-270-3412)

붙임**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규약****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협의회는 어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라남도의 시·군 간에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협의·처리함으로써 어촌지역의 현안사항 해결, 경쟁력 강화, 균형 및 공동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협의회는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별표와 같이 전라남도 시·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지방자치단체”라 한다)로 구성하되 협의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은 총회 의결로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등) ① 협의회는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② 회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의결사항 등 각종 자료를 보관·관리한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5조(조직)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둔다.

② 전직 회장은 고문으로 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⑤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6조(임기) ① 회장·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회장이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협의회 위원과 같은 수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협의회 승인을 거친 후 회장이 위촉한다.

1.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2. 국가 특별행정기관의 장

3. 관련 공공단체의 장
4.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5. 지역사회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 ③ 자문위원은 필요 시 회의에 참석하여 협의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그 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종료 전에도 협의회 의결에 의해 위촉이 해제될 수 있다.

제3장 기능 및 회의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처리한다.

1. 어촌지역 보유자원의 조사, 보존,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어촌지역의 공통 행정수요 파악 및 충족방안에 관한 사항
3. 어촌지역의 현안과제 도출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4. 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 시책 수립, 연계 협력 및 공동 대응 방안 등에 관한 사항

【주요 분야】

지방자치, 지방분권, 균형발전, 국도비 지원, 사회 인프라 확충, 규제 완화, 투자유치 지원,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FTA 극복방안, 미세먼지 대응방안, 기후변화 대응방안, WTO후속조치, 해양쓰레기 처리 방안, 농·수·축 특산물 생산·가공·유통지원 및 개선, 어업 경영안정, 어업 경쟁력 강화, 축제 및 관광 활성화, 출산·육아교육지원, 노인복지, 기타 어촌지역 발전에 필요한 분야

5. 어촌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 정보·노하우 공유, 모범사례 전파, 상호교류에 관한 사항
6. 어촌·어업·어업인에 대한 제도와 정책 등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와 관계기관 등에 제기하는 건의, 대책요구, 기타 대응에 관한 사항
7. 협의회 구성·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의회 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협의·의결) ①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조정을 거친 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 ② 협의안건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대리참석자는 회의에서 토의와 의결권을 갖는다.
- ④ 회장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개정 2023.12.27.>

③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⑤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안건을 준비하여 위원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5일 이내에 협의회 개최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의결사항 등 각종 회의관련 자료의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처리)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협의회 관련업무 담당부서장 및 실무담당 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회의록 작성) 협의회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미합의 사항의 조정 요청) 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 이상 협의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행정협의회 협의사항 조정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협의결과 준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 결정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조정결과에 따라 성실하게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정 안건에 따라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수산분야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협의안건의 별지 서식 실무검토의견서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협

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 및 기타

제17조(경비부담) ①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협의회에서 결정한 공동사무의 처리 또는 공동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담액은 사항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회비 및 분담금)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회비와 분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비와 분담금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회비 납부는 매년 3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 ① 회비 및 분담금 등의 수입·지출 내역은 협의회 간사가 매년 정기회에 보고하고 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수당지급)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제21조(사무의 인계) 회장은 임기만료 후 30일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기록과 경비 및 부담금의 잔액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체를 차기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2조(규약개정)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3조(보칙) 이 규약 이외에 협의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①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별표]

『전라남도 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구성 지방자치단체(제3조 관련)

지 역	지 자 체 명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영광군
	함평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목포시 공고 제 2025 -1003호

공인의 등록 및 폐기 공고

목포시 공인조례 제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등록 및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유 : 인증기 교체에 따른 공인 등록 및 폐기
2. 수 량 : (폐기) 1개, (등록) 1개
3.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 인 명	인 영	규격, 서체	비 고
등록	만호동장인 민원사무전용		2.0cm*2.0cm 푸른전남체	등록일 (2025.06.20.)
폐기	만호동장인 민원사무전용		2.0cm*2.0cm 푸른전남체	폐기일 (2025.06.20.)

2025년 6월 25일

목 포 시 장

목포시 공고 제2025 - 1017호

2025년 외달도 해수욕장 개장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및「목포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외달도 해수욕장 개장 기간 및 시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27.

목 포 시 장

☐ 외달도 해수욕장 개장 기간 및 시간

○ 개장 기간 : 2025. 7. 12. ~ 8. 24. (44일간)

○ 개장 시간 : 09:00 ~ 18:00

※ 이용안내 : 목포시 관광과(061-270-8824)